

# 202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1.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가 군(群)별 분류 체계에서 감염병을 긴급도, 심각도, 전파력 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구분하는 급(級)별 분류 체계로 변경됩니다. 또한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가 추가되며,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1급(17종) 전수감시 발생 즉시 신고	2급(20종)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신고	3급(26종)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신고	4급(23종) 표본감시 7일 이내 신고
<p>생물테러감염병을 포함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p>	<p>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p>	<p>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p>	<p>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에볼라바이러스병</li> <li>나. 마버그열</li> <li>다. 라싸열</li> <li>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li> <li>마. 남아메리카출혈열</li> <li>바. 리프트밸리열</li> <li>사. 두창</li> <li>아. 페스트</li> <li>자. 탄저</li> <li>차. 보툴리눔독소증</li> <li>카. 야도병</li> <li>타. 신종감염병증후군</li> <li>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li> <li>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li> <li>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li> <li>너. 신종인플루엔자</li> <li>더. 디프테리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결핵</li> <li>나. 수두</li> <li>다. 홍역</li> <li>라. 콜레라</li> <li>마. 장티푸스</li> <li>바. 파라티푸스</li> <li>사. 세균성이질</li> <li>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li> <li>자. A형간염</li> <li>차. 백일해</li> <li>카. 유행성이하선염</li> <li>타. 풍진</li> <li>파. 폴리오</li> <li>하. 수막구균 감염증</li> <li>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li> <li>너. 폐렴구균 감염증</li> <li>더. 한센병</li> <li>러. 성홍열</li> <li>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li> <li>버. 카피페넬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파상풍</li> <li>나. B형간염</li> <li>다. 일본뇌염</li> <li>라. C형간염</li> <li>마. 말라리아</li> <li>바. 레지오넬라증</li> <li>사. 비브리오패혈증</li> <li>아. 발진티푸스</li> <li>자. 발진열</li> <li>차. 쯤쯤가무시증</li> <li>카. 렙토스피라증</li> <li>타. 브루셀라증</li> <li>파. 공수병</li> <li>하. 신증후군출혈열</li> <li>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li> <li>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li> <li>더. 황열</li> <li>러. 뎅기열</li> <li>머. 큐열</li> <li>버. 웨스트나일열</li> <li>서. 라임병</li> <li>어. 진드기매개뇌염</li> <li>저. 유비저</li> <li>처. 치쿤구니야열</li> <li>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li> <li>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플루엔자</li> <li>나. 매독</li> <li>다. 회충증</li> <li>라. 편충증</li> <li>마. 요충증</li> <li>바. 간흡충증</li> <li>사. 폐흡충증</li> <li>아. 장흡충증</li> <li>자. 수족구병</li> <li>차. 임질</li> <li>카. 클라미디아 감염증</li> <li>타. 연성하감</li> <li>파. 성기단순포진</li> <li>하. 첨구균딜롬</li> <li>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li> <li>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li> <li>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li> <li>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li> <li>머. 장관감염증</li> <li>버. 급성호흡기감염증</li> <li>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li> <li>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li> <li>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li> </ul>

# 그 외 변경 내용

## ❖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 및 명확화

- (기존) 1~4군 지체없이 ▶ (변경) 1급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 ❖ 감염병명 변경

- 수막구균성수막염 → 수막구균 감염증
- 폐렴구균 → 폐렴구균 감염증

## ❖ 전수감시 감염병(1~3급) 신고의무자 추가

- 치과의사 추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소속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감염병: 1군 전체 + 홍역 + 결핵
- 일반가정 세대주(세대원), 학교·공연장·운송수단·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대표자)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자

## ❖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 전화 등 방법으로 즉시 신고

-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함

## ❖ 4급(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발생 시 보고(보건소)

- 표본감시기관에서 4급 감염병의 사망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보건소에서 상위기관으로 보고 시, 4급 감염병의 사망사례를 보고해야 함

## ❖ 업무중사의 일시 제한

- 대상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감염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자
- 제한기간 : (기존)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 (변경)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증상 제외)

## ❖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 확대

- 대상 :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사망)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기존) 1~4군 벌금 200만원 이하

(변경) 1~2급은 벌금 500만원 이하, 3~4급은 벌금 300만원 이하,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경우 벌금 200만원 이하

\* 표본감시감염병의 경우 벌칙에 없었으나 추가됨